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아 동 · 청 소 년 의 성 보 호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으로 취업제한 점검·확인, 성범죄자 경력자 해임 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상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신고포상금제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상에서의 인용조문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 제57조에 따른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점검·확인 등의 권한 규정(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3조 개정)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일부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되었고, 취업제한 점검·확인, 성범죄자 경력자 해임 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던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안을 개정함

나.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안 제29조제2항제3호 개정)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관계 기관·단체의 종사자가
신고포상금을 수령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
지급 기준을 개선·보완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상에서의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 4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제2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법 제57조제1항”을 “법 제57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단속”을 “단속 및 점검”으로, “공무원”을 “공무원,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종사자 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제7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3

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1항제22호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4 중 제2호라목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57조제1항 각 <u>호의 중앙행정기관</u> 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 3. (생략)	제26조(자료제출의 요구) ----- ----- <u>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u> 제5항----- -----.
제2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u>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u> 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이하 "점검·확인"이라 한다)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생략)	제2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결과 공개) ① ----- ----- <u>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u> 법 제57조에----- ----- ----- ----- -----.
제28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u>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u> 은 법 제58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제28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① ----- <u>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u> -----

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 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생략)

④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

-----.

② -----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

-----.

③ (현행과 같음)

④ -----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

-----.

제29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단속 및 점검-----

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제3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60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
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
의 권한을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다.

1. ~ 3. (생략)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
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등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 시·도지
사

가.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가 설치·운
영하는 전문체육시설

-----공무원,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종사자 등-----

-

제33조(권한의 위임) ①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제3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
1항제22호에 따른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장에게 위임한다.

나.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직장체
육시설 및 등록대상 체육
시설

다. 법 제5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소

2. 다음 각 목의 시설등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 특별자치
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가.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시 · 군
· 구가 설치 · 운영하는 전
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
설

나.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신고대
상 체육시설

다. 법 제56조제1항제13호 각
목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라.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등

마.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말한
다)을 하는 시설등

③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
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도가 설치·운영하는 시
설등: 시·도지사

가.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법 제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린이집

다.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
합서비스 수행기관

라.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의료기관

2.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시장·군수·구청장

3.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삭 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

④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여성
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
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도가 설치·운영하는 시
설등: 시·도지사

가. 법 제34조제2항제9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나. 법 제34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
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
호시설

다. 법 제34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라.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마. 법 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삭 제>

바. 법 제5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2.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시장·군수·구청장

3.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

4. 법 제56조제1항제15호에 따
른 청소년활동기획업소: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5. 법 제56조제1항제18호에 따
른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
업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

⑤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삭 제>

에게 위임한다.

⑥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교육
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
·도 교육감 또는 시·군·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
다.

1.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시·도가 설립
·경영하는 공립유치원: 시·
도 교육감
2.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시·군·구가
설립·경영하는 공립유치원:
시·군·구 교육장
3.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치원 중 사립유치원: 시·도
교육감
4.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로서 시·도 또는 시·군
·구가 설립·경영하는 공립
학교: 시·도 교육감
5.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삭 제>

학교 중 사립학교: 시·도 교육감

5의2.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시·도 교육감

5의3.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시·도 교육감

5의4.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시·군·구 교육장

6.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특별자치시 교육감 및

시·군·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

7. 법 제5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시·도 교육감

8. 법 제56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교육기관: 시·도 교육감

⑦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생략)

2. 개별기준

가. ~ 다. (생략)

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

③ 법 제60조제4항-----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가. ~ 다. (생략)

라. -----
-----제56조제5항

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게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마. (생략)	----- ----- ----- 마. (생략)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연 락 처	02-2100-6405